

# 참고 1 개정사항 요약

구분	현행	개정안	
정부 R & D 정책 (8건)	① 사업비 집행 시 <b>중이 영수증 보관 폐지</b>	증빙내역을 수행기간 종료 후 5년까지 종이 문서로 보존·관리	증빙자료 허용범위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 따른 전자증빙으로 확대
	② R&D <b>졸업제</b> 도입	해당사항 없음	정부R&D사업의 수혜기업 확대 및 R&D 자금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 참여방지를 위해 ICT R&D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함 (5회)
	③ 그랜트 R&D <b>자체 정산</b> 도입	해당사항 없음	그랜트 R&D과제의 경우 자체정산 인정
	④ <b>조기완료과제</b> 에 대한 <b>보상 강화</b>	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및 정액기술료 감경 등	조기완료과제의 경우 잔여기간 연구비 범위 내에서 후속과제를 제안하여 추가 연구기회를 부여
	⑤ <b>성공/실패</b> 등급 판정 <b>폐지</b>	<b>최종평가</b> 시 우수, 보통, 실패(성실, 불성실)로 평가	R&D 정책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	⑥ 신규채용 인력의 <b>인건비 현금지원 대상 확대</b>	<b>중소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</b> 중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현금지원	중소기업 뿐 만 아니라 <b>중견기업 신규 채용 인력</b> 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 가능
	⑦ ICT R&D 기술분류 체계 개편	10대 기술로 구분	기술 분야별 칸막이를 통합하여 타 산업으로 융합이 용이하도록 10대 기술 → 6대 통합기술 분야로 개편
	⑧ ICT R&D <b>인건비 현금인정 분야 개편</b>	10대 기술에 따른 인건비 현금인정분야 구분	<b>기술 분류체계 개편</b> 에 따라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6대 분야의 세분류 기준으로 개편
외부 지적 사항 (2건)	① 연구수당 지급 <b>상한선 설정</b>	<b>인건비의 20%이내</b> 에서 편성하여 사용, <b>지급 상한선 없음</b> (단, 100%제외)	R&D 효율성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 의지 제고를 위해 <b>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지급 상한선 설정(최고 70%)</b>
	② <b>간접비 불인정 기준 명확화</b>	<b>최초협약예산</b> 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	수행기간 중 현물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변동 시 <b>간접비를 재산정</b> 할 수 있으며,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<b>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불인정</b>
상위 규정 (3건)	① <b>다년도 계속과제</b> 의 경우 집행 잔액 <b>이월 사용</b> 허용	전담기관의 장이 이월이 판단될 경우 이월 승인	다년도 협약과제 <b>집행 잔액은 회수하지 않고</b> 다음 해로 이월 사용하도록 허용
	② 연구데이터의 공유·활용 강화	해당사항 없음	<b>과제별 연구데이터관리계획(DMP)</b> 을 도입하여 이행상황을 점검
	③ <b>문제과제</b> 에 대한 <b>출연금 환수기준</b> 반영	<b>총 수행기간동안</b> 지급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환수	횡령, 유용 등 사업비 부정사용의 경우 <b>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환수</b>

구분		현행	개정안
연구자 수요 반영 및 기타 (12건)	① 수행기관별 직접 협약변경 허용	주관기관이 참여기관의 통보사항까지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	통보사항의 경우 <b>주관기관, 참여기관 각각 전담기관</b> 에 문서로 통보
	② <b>영리기관</b> 의 한도 내 간접비 증액 허용	<b>사업계획서</b> 상의 금액보다 <b>증액</b> 하여 사용한 간접비 <b>불인정</b>	<b>영리기관의</b> 경우 간접비 산정 비율 내에서 <b>연차별 간접비 증액 허용</b> (중소·중견기업 10%, 대기업 5%)
	③ 비영리기관 내 SW사 이트 라이선스 사용료의 사업비 집행 인정	해당사항 없음	비영리기관의 경우 <b>고가 SW라이선스</b> 통합 구매 시 <b>공문서를 정산 증빙자료로 사용</b> 가능
	④ 정산결과 통보 및 정산금 반납 절차 간소화	주관기관이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에 제출	정산결과 및 이의신청은 <b>전담기관이 수행 기관별로 통보 및 제출</b>
	⑤ 기술료 납부유예 시 기술실시보고서 기관별 제출	주관기관이 기술실시 보 고서를 취합하여 제출	청년인력 신규채용으로 <b>기술료를 납부유예</b> 할 경우, <b>기술실시보고서를 수행기관별로 제출</b>
	⑥ 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	<b>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</b> 출연연, 특정연 참여연구원의 인 건비를 현금으로 산정	원 소속기관으로부터 <b>인건비 100% 지원</b> 받을 경우 <b>현물산정</b> 이며, 기업파견·프리랜서 등 <b>외부연구원의 경우 현금산정</b> 대상임을 명확화
	⑦ 과제기획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호선	과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가(PM)	<b>민간전문가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</b> 중에서 호선
	⑧ 정산금 및 환수금 연장 <b>기준 명시</b>	해당사항 없음	<b>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반영</b> 등 경영 악화 기준 명시
	⑨ 기술료 미납기업 처리기준에 <b>회생 기업 추가</b>	파산만 있음	기술료를 미납한 <b>회생기업도 파산기업과 동일하게</b>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
	⑩ 성과활용평가 우수 <b>비영리기관</b> 가점부여	해당사항 없음	비영리기관의 <b>총괄책임자가</b> 성과활용평가 에서 우수과제로 평가받을 경우 우대
	⑪ <b>청년 채용 인건비</b> 를 <b>민간 매칭자금</b> 으로 인정	<b>의무고용기간(1년) 유지 하지 못할 경우</b> , 민간매칭 자금으로 인정한 만큼 현금으로 부담	<b>청년인력의 자발적 퇴사</b> 로 의무고용기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, <b>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</b> 한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부담
	⑫ 전담기관 명칭 변경	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<b>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</b>	ICT R&D 전담기관으로서의 조직위상과 기관의 기능·역할을 명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기관명( <b>정보통신기획평가원</b> ) 변경